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2호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우선설치 주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4,
FAX 042-600-5029, E-mail : jsjyga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설치 주택)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하여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각 층마다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부칙<법률 제11037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1.31>

소방시설(제3조관련)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다)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라) 자동확산소화장치

3)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2. ~ 4. (생략)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 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8호(2010. 12.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5. “대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6.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 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7. “간이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라 함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

정된 소화기를 말한다.<개정 2010.12.27>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소화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이다. <삭제><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개정 2010.12.27>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 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고, 자가발전작동장치 및 열감지선은 방호구역 내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할 것

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라.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젠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제5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부 칙(2010.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기준은 고시 후 5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소요예산 추계

○ **소요예산액 : 1,313,250천원**

/ 총 소요금액(1,901,450천원) - 기투자금액(588,200천원)

- 소화기 소요 예산 : 658,750천원(26,350가구×25,000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소요예산 : 654,500천원(13,090가구×25,000원×2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31,850가구에서 예산확보한 18,760가구를 제외한 가구임

○ 산정기초

(단위 : 천원, 세대)

구 분	연도별	총소요액	기 확보예산			향후 소요예산			
			소계	2010년	2011년	2012년	소계	2013년	2014년
총소요액(천원)		1,901,450	588,200	65,700	165,000	357,500	1,313,250	744,000	569,250
세출 (천원)	소화기	796,250	137,500			137,500	658,750	469,000	189,750
	단독경보형 감지기	1,105,200	450,700	65,700	165,000	220,000	654,500	275,000	379,500
보급현황(세대)		31,850	18,760	6,821	6,439	5,500	13,090	5,500	7,590

* 2013년 소화기 세출예산 : 2개년('10 ~ '11년)소화기 미보급세대(13,260가구) 포함

참고 3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별도의 전기배선 필요없음)



- 가격 : 2만원 ~ 3만원
- 설치방법
 - 천정면에 볼트 고정
 - 누구나 손쉽게 구입·설치 가능

○ 소화기

- 각 층마다 비치, 20m이내 비치



(분말소화기)

- 분말소화약제를 사용
유류,전기, 화학약품의
화재는 물론
일반화재에도 효과가
있음

- 2만원~2만5천원
(3.3Kg)